

공개용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19-7호)

2020. 9. 17.

무 역 위 원 회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년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금액은 10,000. 물량 등은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기준년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무역위원회 의결서

2020. 9. 17.

의결 제2020-20호

조사번호 : 구제 23-2019-7

안건명 :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신청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피신청인 : 베트남의 SAVI CO., LTD.(이하 '사비') 및 그 관계사, 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이하 '탄홍') 및 그 관계사, Junma Phu Tho Company Limited.와 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이하 '준마') 및 그 관계사, 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이하 '옌바이') 및 그 관계사, 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이하 '롱자') 및 그 관계사, 그 밖의 공급자

상기 안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들과 관세법 제51조,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제9항제1호, 제63조제1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한다.
2. 베트남산 합판의 공급자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 사비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0.65%
- 탄홍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0.27%
- 준마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0.55%
- 엔바이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25%
- 룡자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18%,
- 그 밖의 공급자 : 10.54%

이 유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이하 '신청인')가 '19.9.27.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신청인 및 국내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최종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 협정 관련 규정들과 관세법 제51조1), 제52조2),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1호3), 제63조제1항 및 제4항4), 제65조제1항 및 제2항5)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문과

- 1) 관세법 제51조 :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기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 2) 관세법 제52조 :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기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3)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9항제1호 :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기관세부과
- 4)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제4항 : “①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무역위원회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이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다 음

I. 배경

신청인은 '19.9.27.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조사실은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19.12.3.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이견산업(주), 선창산업(주), 동일산업(주), 성장기업(주) 등 4개사이며, 조사실은 4개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된 사비, 탄홍, 준마 푸토, 키우티 준마와 자발 대응업체로 선정된 엔바이, 룡자에 대하여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실은 미산우드(주), (주)태신, (주)케이원 등 국내 수입자 및 (사)한국공업포장협회 등 수요자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20.6.18.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건 반덤핑 조사의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공청회

5)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제2항 : “①……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를 개최하여 본건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조 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들에게 결정 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이 포함된 수정된 중간보고서를 송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20.8.19.에는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0.8.24.에는 덤핑률 산정내역 등 덤핑률 조사자료를 이해 관계인에게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조사대상물품, 국내 동종물품, 국내산업의 범위 및 비밀취급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6)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물품'7)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조사대상물품과 관련, 무역위원회공고 제2019-10호('19.12.3.)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은 품명이 합판(Plywood)이고,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하도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가 6mm이상인 후판(厚板) 제품8)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는 HSK 4412.31.4011, 4412.31.4019, 4412.31.4021, 4412.31.4029, 4412.31.5010, 4412.31.5090, 4412.31.6010, 4412.31.6090, 4412.31.7010, 4412.31.7090, 4412.33.4010, 4412.33.4020, 4412.33.5000, 4412.33.6000, 4412.33.7000, 4412.34.4010, 4412.34.4020, 4412.34.5000, 4412.34.6000, 4412.34.7000, 4412.39.9000, 4412.99.4100, 4412.99.5100,

-
- 6) 관세법 제60조 1항 : “무역위원회는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호) 조사대상물품
 3항 : “무역위원회는 ……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7)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 2018-16호) 제2조 제2호: “‘조사대상물품’이란 영 제60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덤핑 및 보조금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 8) 두께가 6mm이상이고, 너비가 220mm이하이며, 길이가 2,000mm이하로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

4412.99.6100, 4412.99.9100을 포함한다.

조사보고서⁹⁾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는 강도, 접착성, 함수율, 유해화학물질(폼알데하이드) 방산량 등이 있으며 표면처리(기계적 가공·코팅 등) 여부, 접착제의 종류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진다. 조사대상물품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물품은 국내 수입상이 대부분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최종 소비자 또는 중간 유통상)에게 판매하거나,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내 동종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보고서¹⁰⁾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과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측면에서 국내생산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가. 물리적 특성

합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는 강도, 접착성, 함수율, 유해화학물질(폼알데하이드) 방산량 등이 있으며, 표면처리(기계적 가공 및 코팅 등) 여부, 접착제의 종류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진다.

9) 조사보고서 pp.3~5

10) 조사보고서 pp.6-25

신청인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은 합판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국내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은 합판의 해당 종류별 규격·품질기준을 이미 충족하였으므로 동 기준 내에서 그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면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 물리적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측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측은 국내 합판시장의 주요 수요대상인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에 대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신청물품도 이에 비교가능한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베트남 ×××사의 테고합판을 선정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신청인측은 '포장용 합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사의 테고합판 외에 베트남 공급자의 보통합판(준내수-E2급)과 비교할 수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국내생산품 중 보통합판(준내수-E0급)은 포장용을 포함해 건설기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경쟁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수요자 중 (사)한국공업포장협회(이하 '포장협회')는 이해관계인회의(20.2.13, '20.8.19), 공청회(20.6.18) 등을 통해 주요 조사대상물품은 국내생산품과 물리적 특성 등이 유사한 수준이지만, 포장업체가 사용하는 소위 '포장용 합판'은 수출용 목상자 제작으로 사용되는 일회용으로서 보통합판(준내수-E2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생산품에 비해 물리적 특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포장협회는 베트남 ×××사가 생산하는 물품은 고가 및 고품질의 테고합판으로서 수입비중이 2%에 불과하여 조사대상물품으로서 대표성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포장협회측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포장협회는 포장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베트남산 보통

합판(준내수-E2급)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두차례('20.3월, '20.8월)에 걸쳐 제출하였다. 포장협회에서 제출한 일부 시험성적서('20.3월 제출)는 '인장전단접착력'이 '합판 규격·품질기준' 이하의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청회 이후 제출한 시험성적서('20.8월 제출)는 동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보고서¹¹⁾에 의하면, 합판의 종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산림과 학원고시 제2020-2호)(이하 '합판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근거하여 보통합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구조용 합판, 표면가공 합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외의 종류와 용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조사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측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내 합판시장의 주요 수요대상인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측은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측이 제출한 국내생산품과 베트남 xxx사의 테고합판의 시험성적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생산품과 조사신청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는 대체 가능한 수준이라고 검토하였다.

보통합판 관련 '포장용 합판' 이슈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자와 포장협회측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비교하여, 베트남 수입합판과 국산품 간 물리적 특성이 '인장전단 접착력'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 항목은 국산품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양측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결과 모두 합판의 해당 종류별 규격·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서 동 기준 내에서는 그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나. 용도

수출자측은 저가 베트남산은 중국산과 상호 경쟁관계이나, 가격차이가 큰 국내 생산품과는 상호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수출국측¹²⁾은 베트남산은 주로

11) 조사보고서 pp.6-12

12) 본 건 산업피해조사 공청회시('20.6.18) 수출자측 대리인의 주요발언 주장내용과 주한 베트남대사관 상무관(수출국) 최종발언 주장 내용임

포장용으로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수요자 중 포장협회는 조사대상물품 중 저가 및 저품질인 '포장용 합판'(보통합판-준내수-E2급)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목재이용법 등 관련 규정에서 용도가 포장용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포장협회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보통합판-준내수-E2급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포장업체가 목상자 제작에 사용하는 합판은 98%이상이 저가의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으로 특정되며, 목재이용법에 따라 소비자가 합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용도별로 합판의 품질이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포장협회는 포장용 합판은 대부분 두께가 6mm~11.5mm 이고, 국내 합판업체의 생산은 주로 12mm이상(75% 상당)이므로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통합판-준내수-E2급을 거푸집 또는 실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재이용법령과 산림청의 합판 규격·품질기준 고시를 위반하는 불법이므로 단속의 영역일 뿐 반덤핑조사의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 모두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외장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국내생산품 중 '보통합판'은 포장용을 포함해 인테리어용, 건축내장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용도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특히 베트남산 준내수-E2급은 포장용 보다는 국내생산자의 주력 제품인 건설용 합판(실내용보다는 주로 거푸집용)으로 건설현장에서 상호 대체사용되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준내수-E2 분류는 접착성·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근거한 분류일 뿐 제품의 용도를 규정한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선택의 문제이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베트남산 합판의 시장점유율이 2배 증가함에 따라 국산품 수요가 절반으로 감소한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소위 '포장용 합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없으며 실제용도는 포장용

업체가 아닌 소비자 선택사항으로 이는 과거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합판 반덤핑 조사('13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한국산업표준(KS)에 합판 두께별 $\pm 4\%$ 의 허용오차를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11.5mm의 수입산 합판과 12mm의 국내생산품을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생산자는 12mm이하의 합판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거푸집용 등 건설기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건설 표준 시방서의 적용상황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상 그 불법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목재산업 관련 소관부처인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 조희 및 수요자 등에 대한 현지실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¹³⁾에 의하면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은 목재이용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합판의 종류에 따라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외장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자로부터 최종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합판 유통업자들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주요 수요처는 건설공사 하청업체가 많았으며 아파트 지하공사, 중소규모 건축공사 기자재, 건물 내장재 등 용도로 납품되고 있었고 일부 포장재용 합판도 같이 납품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고, 납품물량은 베트남산 수입합판이 가장 많았고, 준내수-E2급 보통합판이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단가가 가장 낮은 베트남산 합판이 국산을 대체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장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두께(6mm~11.5mm) 역시, 국내생산자도 상당부분 생산하고 있고, 국내생산품 중 '보통합판'은 포장용을 포함해 인테리어용, 건축내장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과 용도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검토되었다.

조사보고서¹⁴⁾에 의하면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의 거푸집 또는 실내

13) 조사보고서 pp.13-19

사용에 대한 불법여부 및 처벌가능성을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산림청에 의견 조희와 관계부처 회의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산림청은 합판 규격·품질기준 고시상의 별도 용도(구조용, 거푸집 등)의 구분은 안정성 등 특정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로 예시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용도는 소비자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최종 사용과 관련하여 산림청 관련 법률의 단속 권한 외에 있다고 하였고, 국토부는 건설공사 관련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설계도서에 합판 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음에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발주자가 정한 합판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위반이라고 하였다.

위의 국토부와 산림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발주자가 설계도서에 합판 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품질검사에 거푸집용 합판 대신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을 포함한 보통합판을 사용하는 것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보통합판을 거푸집용 또는 실내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은 아닐 수 있으며, 최종 사용과 관련하여서 산림청 관련 법률의 단속 권한 외에 있다는 산림청의 검토의견에 따라 목재이용법 및 관련 법령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수입자측, 이하 '합판유통협회')는 공청회 시('20.6.18.) 합판 제품은 수요자에게 맞거나 가격이 맞으면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포장용으로 정해진 합판은 없다고 발언하였다.

조사실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용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간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합판 반덤핑 조사건¹⁴⁾에서도 '포장용 합판'에 대한 동일한 이슈 주장이 있었으며, 동종물품 여부에 대해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14) 조사보고서 pp.13-19

15) 무역위원회 의결 제2013-24호('13.8.21)

다. 품질 및 소비자평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합판(국산합판, 수입합판)의 품질기준은 합판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품질항목으로는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휨 성능 등이 있다.

소비자평가는 소비자가 용도에 맞는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답변서를 제출한 수입자 및 수요자는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될 정도의 품질 수준 범위 안에서 가격이 저렴한 조사대상 물품을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합판유통협회는 조사대상물품은 국내생산품의 주요 원재료인 침엽수(뉴질랜드산 및 칠레산) 원목보다 훨씬 저렴한 속성수(현지 조림)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생산자는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다.

포장협회는 이해관계인회의(‘20.2.13), 공청회(‘20.6.18) 등을 통해 포장용 목상자 구성품으로서 합판은 도난방지, 일시적 방수 역할을 하여 품질 수준보다 가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포장용으로 수입하는 베트남산 수입품은 수출용 목상자에 사용되는 일회용으로서 사용 후 폐기처분되는 저가 및 저품질(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이므로 국산품과 경쟁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위 포장협회는 회원사 자체 의견조사 결과, 베트남산과 국내산 합판에 대한 품질에 차이가 크고 가격차이가 커서 상호간 대체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실은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출 여부에 대한 회신도 함께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포장협회는 주로 사용하는 베트남산 보통합판(준내수-E2급)에 대한 품질 시험성적서를 두차례(‘20.3월, ‘20.8월)에 걸쳐 제출¹⁶⁾하였다.

16) 조사보고서 pp.8-9

조사실은 제출된 시험성적서, 목재산업 관련 소관부처인 산림청 등 관련기관의 의견 조회, 수요자 등에 대한 현지실사한 결과 및 주요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¹⁷⁾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 합판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품질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소위 저품질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위 베트남산 합판 또한 품질이 다양하여 품질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최종 수요자의 요구에 만족하는 품질의 범위안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산 합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수입·수요자 현지실사 결과, 포장업계에서는 수출용 목상자 제작 용도로 저가의 베트남산 수입합판(보통합판-준내수-E2급)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베트남산 저가 수입합판(보통합판-준내수-E2급)이 포장용 외에도 건설현장 등 다양한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 기자재(거푸집용, 내장재, 보양재 등) 등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내생산품(보통합판 E1급 이상 등)과 위 베트남산 수입합판은 국내 합판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면서 인테리어용, 건축내장용, 포장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및 대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베트남 수입합판과 국산품 간 물리적 특성이 '인장전단접착력'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 항목은 국산품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양측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위 물리적 특성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두 합판의 해당 종류별 규격·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서 동 기준 내에서는 그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검토되었다.

목재관련 주요 언론보도¹⁸⁾에서도 실제 건설현장과 인테리어 현장에서 보통합판-준내수-E2급 수입합판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그 중 베트남산 합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17) 조사보고서 pp.23-24

18) 조사보고서 p.24

조사보고서¹⁹⁾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은 구성요소,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도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마. 국내 동종물품 관련 검토 종합

조사보고서²⁰⁾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품명, 제조공정,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용도 및 기능, 품질 및 소비자평가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혼용 또는 대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일부 포장업계에서 제기하는 '포장용 합판'(보통합판-준내수-E2급)도, 합판 등 목재산업 소관부처인 산림청 의견, 건설공사 관련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의견,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현지실사, 소비자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생산품(보통합판-준내수-E1급 이상 등)과 인테리어용, 건축자재용, 포장용 등 다양한 용도에서 상업적으로 대체사용 가능하며 국내시장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아울러 그간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합판 반덤핑 판정 시에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국내산업의 범위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19) 조사보고서 pp.6-25

20) 조사보고서 p.25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국내총생산량 비중,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 국내생산자의 조사대상물품 수입 여부, 국내생산자의 당해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가. 국내산업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

조사보고서²¹⁾에 의하면, 조사실이 해당 산업 주무부처(산림청 임업통상팀)에 확인한 결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는 선창산업(주), 이견산업(주), 성장기업(주), 동일산업(주) 4개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4개사 모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이 중 선창산업(주), 이견산업(주) 2개사만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답변서를 제출한 선창산업(주)과 이견산업(주) 2개사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는 '18년 국내 총생산량의 약 60%대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국내산업의 6월전 조사대상물품 수입 및 해외 공급자 등과 특수관계 여부

조사실은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선창산업(주)과 이견산업(주)은 조사신청일 6월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²²⁾이 없고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도 없으므로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성장기업(주)²³⁾과 동일산업(주)의 경우 조사신청, 조사개시 및 질의서 등 본 조사절차에 대응하거나 참여하지 않아 국내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 국내산업의 범위관련 검토 종합

21) 조사보고서 pp.30-31

22) 선창산업(주)의 경우 "18년도에 베트남산 합판 $\times\times\times\text{m}^3$ 을 일부 수입하였으나, '18년 전체 베트남산 합판 수입량 $\times\times\times\text{m}^3$ 의 약 $\times\times\times\%$ 로 미미한 수준으로, 불안정한 공급문제로 이후 수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함.

23) 지씨글로벌(주)(자회사, 지분율 100%)는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로서 조사신청일 6월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19년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의 약 $\times\times\times\%$)한 실적 있음

이상에서 볼 때, 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선창산업(주), 이견산업(주)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을 국내산업으로 정한다.

4. 비밀취급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은 ‘조사신청서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은 이에 따라 비밀취급 요청 자료를 제출한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와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조사보고서²⁴⁾에 의하면,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및 수입·수요자 등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한 목록 및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비밀취급 여부 검토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Ⅲ. 덤핑사실

위원회는 덤핑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급자별로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 공급자 선정

조사보고서²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통관자료를 통해

24) 조사보고서 pp.35~38

약 140여개 공급자를 확인하였으나, 조사기간 내에 모든 공급자에 대해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impracticable)한 바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²⁶⁾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²⁷⁾에 따라 대한민국수출물량의 약 xxx%를 공급한 상위 4개사인 '사비', '탄홍', '준마 푸토', '키우티 준마'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조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에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WTO 반덤핑협정 제6.10.2조²⁸⁾에 따라 자발적인 대응을 신청한 19개 공급자 중에서, 조사실의 조사부담, 조사의 적시 종결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로서 조사대상공급자 다음으로 대한민국수출물량이 많은 '엔바이', '룽자'를 자발대응업체로 선정하였다

2. 덤핑사실 조사경과

조사보고서²⁹⁾에 의하면, 조사실은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19.12.3.) 및 자발대응업체('19.12.27.)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조사대상공급자인 '사비' '탄홍', '준마 푸토 및 키우티 준마'는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 후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이 요청을 수용하여 당초 '20. 1. 14일이었던 답변기한을 '20. 1.28일로 2주 연장승인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며, 연장된 기한 내에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서가 접수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덤핑사실을 조사하였다. 자발대응업체인 '엔바이', '룽자'도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 후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이 요청을 수용하여

25) 조사보고서 p.39

26)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 "(전략) 당국은 그 선정시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이해당사자를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중략)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27)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전략)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8) WTO 반덤핑협정 제6.10.2조 : "(전략) 부당하게 당국에 부담이 되고 조사의 적시 종결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은 최초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고려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적시에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 자발적인 대응이 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29) 조사보고서 p.40

당초 '20. 2. 5일이었던 답변기한을 '20. 2.10일로 5일 연장 승인하였으며, 연장된 기한 내에 모든 자발대응업체의 답변서가 접수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덤핑사실을 조사하였다.

조사실은 덤핑사실을 확인하고 '20.4.21. 산정된 예비덤핑률 내역을 신청인, 조사대상공급자, 자발대응업체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0.4.21~5.1.)를 제공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7조³⁰⁾에 의한 공급국 현지실사를 추진³¹⁾하였으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 따른 국제항공편의 부재 및 검역강화 등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대신 답변서를 제출한 모든 조사대상공급자 및 자발대응업체에 대하여 서면 보충질의를 발송('20.7.7.)하였다. 이에 모든 조사대상 공급자 및 자발대응업체는, 답변서의 검증을 위해 조사실이 선정한 한국 수출판매물품 샘플에 대한 판매계약서·신용장·수출물품신고서·선하증권·매출전표·은행거래내역 등의 증빙과 원가 산정내역 등의 답변자료를 답변기한내('20.7.27)에 모두 제출하였다.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가. 사비

조사보고서³²⁾에 의하면, 사비는 생산자 겸 수출자로 베트남 하노이(Ha Noi)에

30) WTO 반덤핑협정 제6.7조 : “당국은 관련기업의 동의를 얻고 당해 회원국의 정부대표에게 통보하여 이러한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상세사항을 추가로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may carry out)” (후략)

31)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 조사실은 베트남정부에 현지실사 실시 의사를 전달하며 현지실사 관련 인원의 베트남 입국, 현지 실사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 가능성을 사전에 공문으로 타진('20.6.3.)하였고, 베트남 측은 코로나 확산, 해외유입 확진자 지속발생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 대해 양해를 당부하며 향후 정보제공에 대한 적극적 협력의사를 표명함('20.7.20.). 이에 조사실은 현지실사 대신 서면자료 추가 요청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설명함

32) 조사보고서 pp.41~47

사무실 1개소, 닌빈(Ninh Binh)에 생산공장 2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xxx이 각각 지분의 xxx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대한민국수출량은 xxxm³, 제3국 수출량은 xxxm³이며, 내수판매는 xxxm³로 xxx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분류기준으로 표면처리 여부, 목재의 종류, 두께, 너비, 접착제의 종류, 단판의 쉼수 등 6가지 항목을 제시하였고, 사비는 CCN의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진 후 조사실이 제시한 구성방법대로 개별 거래 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사비가 제출한 내수판매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보충질의 및 샘플링 검토 결과를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사비의 공급국 동종물품 판매가격(이하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급국 동종물품 판매수량(이하 '내수판매수량')의 충분성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총 내수판매수량이 대한민국 수출수량의 5% 미만³³⁾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실은 모든 모델에 대해 구성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생산원가(COP)에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총 구성가격(Gross CV)을 산정함에 있어, 생산원가는 사비가 제출한 제조원가(COM)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적정이윤은, 사비의 내수판매수량이 미소하여 이윤 산정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 (iii)의 규정³⁴⁾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중 베트남 내수시장에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을 판매한 기업

33)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수량은 xxxm³로 대한민국수출수량(xxxm³)의 xxx% 수준

34)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 (전략)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자료에 기초한다. (중략) 이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iii)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액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으로서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는 뚜안 앙(Thuan An)社³⁵⁾와 앙 꾸엥(An Cuong)社³⁶⁾의 이윤율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총 구성가격에서 판매 직접비를 공제하여 순 구성가격(Net CV)을 산정하고 이를 조정된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사비의 대한민국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임, 핸들링 비용, 해상운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사비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운임포함 인도조건(Cost and Freight, 이하 'CFR') 가격에 보험료를 더하여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이하 'CIF')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10.65%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나. 탄홍

조사보고서³⁷⁾에 의하면, 탄홍은 생산자 겸 수출자로 하노이(Ha Noi)에 사무소와 생산공장 1개소, 박닌(Bac Ninh)에 생산공장 1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xxx이 지분의 xxx%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대한민국수출량은 xxxm³, 제3국 수출량은 xxxm³이며, 내수판매는 xxx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CCN 분류기준으로 표면 처리 여부, 목재의 종류, 두께, 너비, 접착제의 종류, 단판의 쉼수 등 6가지 항목을 제시하였고, 탄홍은 CCN의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진 후 조사실이 제시한 구성방법대로 개별거래 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탄홍이 제출한 대한민국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35) <https://gothuanan.vn/category/quan-he-co-dong/bao-cao-tai-chinh>

36) <https://www.ancuong.com/en/quan-he-nha-dau-tu-1/bao-cao-tai-chinh-1.html>

37) 조사보고서 pp.48~54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보충질의 및 샘플링 검토 결과를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CCN과 관련, 탄홍은 조사실이 진행한 예비덤핑률 산정내역에 대한 의견 조희시, 동일 CCN내에 가격격차가 있는 모델들이 공존함을 사유로 CCN의 재검토를 요청(“20.5.1.)하였으나, 조사실은 CCN에 대해 이미 충분한 의견제시 기간³⁸⁾을 제공한 점, 해당 기간에 탄홍이 상기와 같은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한 점, 예비덤핑률 산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CCN부터 다시 검토할 경우 조사를 반덤핑협정에서 정하는 조사시한까지 종료하는데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실은 탄홍의 내수판매물량이 전혀 없으므로 모든 모델에 대해 구성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생산원가(COP)에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총 구성가격(Gross CV)을 산정함에 있어, 생산원가는 탄홍이 제출한 제조원가(COM)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적정이윤은, 탄홍의 내수시장 이윤을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실적이 없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 (iii)의 규정³⁹⁾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중 베트남 내수시장에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을 판매한 기업으로서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는 뚜안 앙(Thuan An)社⁴⁰⁾와 앙 꾸엩(An Cuong)社⁴¹⁾의 이윤율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총 구성가격에서 판매 직접비를 공제하여 순 구성가격(Net CV)을 산정하고 이를 조정된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였다.

적정이윤과 관련, 탄홍은 수출이윤율이 내수이윤율보다 높기 때문에 수출 판매에 주력하고 있고 조사대상기간중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이윤율이 xxx%로 낮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의 2018년 기업경영분석상 ‘목재 및 나무제품’의

38)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의 기간(“19.12.3.~12.31.)을 제공

39)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 (전략)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자료에 기초한다. (중략) 이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iii)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액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0) <https://gothuanan.vn/category/quan-he-co-dong/bao-cao-tai-chinh>

41) <https://www.ancuong.com/en/quan-he-nha-dau-tu-1/bao-cao-tai-chinh-1.html>

대기업 이윤율이 4.28%, 중소기업 이윤율이 2.79%인 점을 고려해 5% 미만의 이윤율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는 탄홍의 내수판매가 xxx로써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양(대한국수출물량의 5% 미만)에 해당하므로 탄홍의 내수거래 이윤율 관련 주장들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하고, 탄홍의 내수 이윤율 산정하는데 있어 이미 타국산 합판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한 상황⁴²⁾ 하의 국내기업 자료보다 공급국 기업의 자료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적정이윤율 산정하였다.

조사는 탄홍의 대한국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임, 핸들링 비용, 해상운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탄홍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CFR 가격에 보험료를 더하여 CIF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10.27%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 준마

조사보고서⁴³⁾에 의하면, 조사는 조사개시 당시 각각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된 '준마 푸토'와 '키우티 준마'가 답변서에서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며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있어 관계사임을 인정함에 따라 두 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단일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준마푸토 및 키우티 준마(이하 '준마')는 생산자 겸 수출자로 베트남 푸토(Phu Tho)와 빈푹(Vinh Phuc)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대한국 수출량은 xxxm³, 제3국 수출량은 xxxm³이며, 내수판매는 xxxm³로 xxx하였다.

42) ①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2011.2.1.~현재), ②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2013.10.18.~현재), ③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16.3.11.~현재) ④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5.29.~9.28)

43) 조사보고서 pp.55~62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CCN 분류기준으로 표면 처리 여부, 목재의 종류, 두께, 너비, 접착제의 종류, 단판의 쉼수 등 6가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준마는 CCN의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진 후 조사실이 제시한 구성방법대로 개별거래 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준마가 제출한 내수판매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보충질의 및 샘플링 검토 결과를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준마의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총 내수판매 물량이 대한민국 수출물량의 5% 미만⁴⁴⁾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량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실은 모든 모델에 대해 구성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생산원가(COP)에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총 구성가격(Gross CV)을 산정함에 있어, 생산원가는 준마가 제출한 제조원가(COM)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적정이윤은, 준마의 내수판매물량이 미소하여 이윤 산정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 (iii)의 규정⁴⁵⁾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중 베트남 내수시장에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을 판매한 기업으로서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는 뚜안 앙(Thuan An)⁴⁶⁾과 앙 꾸엩(An Cuong)⁴⁷⁾의 이윤율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총 구성가격에서 판매 직접비를 공제하여 순 구성가격(Net CV)을 산정하고 이를 조정된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였다.

44)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물량은 xxxm³로 대한민국 수출물량(yyyymm³)의 xxx% 수준

45)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 (전략)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자료에 기초한다. (중략) 이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iii)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액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6) <https://gothuanan.vn/category/quan-he-co-dong/bao-cao-tai-chinh>

47) <https://www.ancuong.com/en/quan-he-nha-dau-tu-1/bao-cao-tai-chinh-1.html>

적정이윤과 관련, 준마는 수출이윤율이 내수이윤율보다 높기 때문에 수출판매에 주력하고 있고 조사대상기간중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이윤율이 xxx%(키우티 준마)와 xxx%(준마푸토)로 공급국 내수시장에선 xxx%가 충분한 이윤율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산업에 해당하는 선창산업과 이견산업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동안 가장 높았던 이윤율이 4.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5% 미만의 이윤율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실은 준마의 내수판매가 xxxm³(대한국 수출물량의 xxx%)으로써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양(대한국수출물량의 5% 미만)에 해당하므로 준마의 내수 거래 이윤율 관련 주장들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하고, 준마의 내수 이윤율 산정하는데 있어 이미 타국산 합판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한 상황⁴⁸⁾ 하의 국내기업 자료보다 공급국 기업의 자료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적정이윤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준마의 대한국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임, 핸들링 비용, 해상운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준마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CFR 가격에 보험료를 더하여 CIF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10.55%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라. 옌바이

조사보고서⁴⁹⁾에 의하면, 옌바이는 생산자 겸 수출자로 베트남 북부 박닌(Bac Ninh)에 본사, 옌바이(Yen Bai)에 지사와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xxx이 지분의 xxx% 소유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대한국수출량은 xxxm³, 제3국 수출량은

48) ①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2011.2.1.~현재), ②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13.10.18.~현재), ③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16.3.11.~현재)
④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5.29.~9.28)

49) 조사보고서 pp.63~68

xxxm³이며, 내수판매는 xxxm³로 xxx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CCN 분류기준으로 표면 처리 여부, 목재의 종류, 두께, 너비, 접착제의 종류, 단판의 쉼수 등 6가지 항목을 제시하였고, 엔바이는 CCN의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진 후 조사실이 제시한 구성방법대로 개별거래 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엔바이가 제출한 내수판매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보충질의 및 샘플링 검토 결과를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엔바이의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총 내수판매 물량이 대한민국 수출물량의 5% 미만⁵⁰⁾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량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실은 모든 모델에 대해 구성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생산원가(COP)에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총 구성가격(Gross CV)을 산정함에 있어, 생산원가는 엔바이가 제출한 제조원가(COM)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적정이윤은, 엔바이의 내수판매물량이 미소하여 이윤 산정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 (iii)의 규정⁵¹⁾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중 베트남 내수시장에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을 판매한 기업으로서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는 뚜안 앙(Thuan An)社⁵²⁾와 앙 꾸엩(An Cuong)社⁵³⁾의 이윤율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총 구성가격에서 판매 직접비를 공제하여 순 구성가격(Net CV)을 산정하고 이를 조정된 정상가격으로

50)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물량은 xxxm³로 대한민국 수출물량(xxxm³)의 xxx% 수준

51)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 (전략)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자료에 기초한다. (중략) 이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iii)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액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2) <https://gothuanan.vn/category/quan-he-co-dong/bao-cao-tai-chinh>

53) <https://www.ancuong.com/en/quan-he-nha-dau-tu-1/bao-cao-tai-chinh-1.html>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엔바이의 대한민국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임, 핸들링 비용, 해상운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엔바이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CFR 가격에 보험료를 더하여 CIF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9.25%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마. 룡자

조사보고서⁵⁴⁾에 의하면, 룡자는 생산자 겸 수출자로 베트남 북부 빈푹(Vinh Phuc)에 소재하고 있고, xxx이 각각 지분의 xxx%, xxx%, xxx%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대한민국 수출량은 xxxm³, 제3국 수출량은 xxxm³이며, 내수판매는 xxx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CCN 분류기준으로 표면 처리 여부, 목재의 종류, 두께, 너비, 접착제의 종류, 단판의 쉼수 등 6가지 항목을 제시하였고, 룡자는 CCN의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진 후 조사실이 제시한 구성방법대로 개별거래 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룡자가 제출한 대한민국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보충질의 및 샘플링 검토 결과를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룡자의 내수판매물량이 전혀 없으므로 모든 모델에 대해 구성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생산원가(COP)에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총 구성가격(Gross CV)을 산정함에 있어, 생산원가는 룡자가 제출한

54) 조사보고서 pp.69~75

제조원가(COM)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적정이윤은, 통자의 내수시장 이윤을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실적이 xxx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 (iii)의 규정⁵⁵⁾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중 베트남 내수 시장에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을 판매한 기업으로서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는 뚜안 앙(Thuan An)社⁵⁶⁾와 앙 꾸엩(An Cuong)社⁵⁷⁾의 이윤율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총 구성가격에서 판매 직접비를 공제하여 순 구성가격(Net CV)을 산정하고 이를 조정된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통자의 대한국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임, 핸들링 비용, 해상운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포장비용, 커미션, 통관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통자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CFR 가격에 보험료를 더하여 CIF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9.18%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4. 덤핑사실 조사결과 종합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사비’, ‘탄홍’, ‘준마’에 대하여 각각 10.65%, 10.27%, 10.55%의 덤핑률이 산정되었고, 자발대응업체로 선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엔바이’, ‘통자’에 대하여 각각 9.25%, 9.18%의 덤핑률이 산정되었는 바,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5.8조⁵⁸⁾에서 규정한 최소허용 수준을 초과함을 보여준다.

55)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 (전략)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자료에 기초한다. (중략) 이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iii)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액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6) <https://gothuanan.vn/category/quan-he-co-dong/bao-cao-tai-chinh>

57) <https://www.ancuong.com/en/quan-he-nha-dau-tu-1/bao-cao-tai-chinh-1.html>

58) “(전략)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마진은 최소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후략)”

이에 위원회는 위 산정된 덤핑률에 근거하여 조사대상기간('18.7.1.~'19.6.30.) 중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VI.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해야 하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혹은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설비가동율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 및 가격 효과)와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 및 제조원가, 이윤, 고용 및 임금 등 제반 경영지표에 대하여 검토⁵⁹⁾하였다.

59) '19년 전체통계는 '19년 상반기의 2배수를 적용하여 연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이 보고서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1. 덤핑물품⁶⁰⁾ 수입의 효과 : '물량' 및 '가격' 효과

가.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조사보고서⁶¹⁾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16년 1,000m³에서 '18년 1,754m³으로 '16년 대비 약 75% 절대적으로 크게 증가해왔으며, '19년 상반기에는 '18년도 상반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16년 ×××%에서 '18년 ×××%('19년 상반기 ×××%)로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동종물품⁶²⁾의 국내시장점유율은 덤핑물품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 '16년 ×××%에서 '18년 ×××%('19년 상반기 ×××%)로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그간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에 대한 효과와 동시에 덤핑으로 인한 저가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 베트남산 합판으로 수입이 대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조사보고서⁶³⁾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연도별 가격 증감률이 아래와 같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m³당 판매가격은 연평균 0.9% 하락하였으나 국내 동종물품의 m³당 판매가격은 연평균 2.0% 소폭 상승하여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저가 및 하락 추세로 조사되었다. 이에 덤핑물품의 m³당 판매

60) 덤핑률 조사에서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하 이 의결서에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덤핑물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61) 조사보고서 pp.79~81

62) 이하 이 보고서에서 '동종물품'이란 국내산업이 생산하는 국내동종물품을 말함

63) 조사보고서 pp.82~85

가격은 '16년 10,000원에서 '17년 9,192원으로 전년대비 8.1%하락하였으며, '18년 9,604원으로 전년대비 4.5%상승하였고, '19년 상반기 10,523원으로 5.2% 상승한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m³당 판매가격은 '16년 10,000원에서 '17년 9,659원으로 전년대비 3.4%하락하였으며, '18년 10,221원으로 전년대비 5.8%상승하였고, '19년 상반기 10,495원으로 4.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의 저가판매 여부 관련하여, 덤핑물품의 m³당 판매가격에 비추어 볼 때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덤핑물품이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의 m³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16년 ×××%, '17년 ×××%, '18년 ×××%, '19년 상반기 ×××%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며, '16년에 비해 '19년 상반기 비교시 가격차이는 ×××원에서 ×××원으로 지속적으로 커지는 추세로 덤핑물품의 공격적인 저가판매 기조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관련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국내시장에서 절대적 및 상대적 물량이 급증하면서, 지속적으로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7년도의 경우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8.1% 저가판매되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일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관련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은 m³당 적정판매가격⁶⁴⁾ 보다 '16년 ×××원, '17년 ×××원, '18년 ×××원, '19년 상반기 ×××원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가격 차이가 점차적으로 벌어지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에 비해 '16년 ×××%, '17년 ×××%, '18년 ×××%, '19년 상반기 ×××%로 낮은 비율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이 국내

64) 적정판매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관리비) ÷ (1 - 적정영업이익률)

- 적정영업이익률은 동종업종(목재 및 나무제품)의 조사대상기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기업경영분석(C16) 매출액영업이익률 '16년 5.14%, '17년 3.90%, '18년 3.73%, '19년 3.73%을 적용함(미 발표된 '19년은 '18년도 적용)

동종물품보다 저가로 판매되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증감률 방향이 일치하였으며,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이 적정판매가격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상승 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의 전체 국내시장 점유율이 '16년 $\times\times\times\%$ 에서 '19년 상반기 $\times\times\times\%$ 으로 급증하면서 사실상 국내시장의 가격결정을 선도하게 되었고, 덤핑물품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적정판매가격보다 절반이하 수준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자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생산 및 가동률

조사보고서⁶⁵⁾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약 $\times\times\times\text{m}^3$ 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16년 $1,000\text{m}^3$, '17년 973m^3 , '18년 973m^3 로 지속 감소하였고, 19년 상반기 현재 973m^3 로 조사되었다. 특히 '18년 국내산업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29.4% 급감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이 급증한 영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16년 $\times\times\times\%$, '17년 $\times\times\times\%$ 로 유지되다가 '18년에는 $\times\times\times\%$ 로 '16년대비 31%p 급감하였고 '19년 상반기 현재 $\times\times\times\%$ 의 현저히 낮은 가동률을 보였다. 덤핑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시장점유율을 크게 상실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국내생산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동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부 공정의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5) 조사보고서 p.87

나. 판매, 재고 및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⁶⁶⁾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16년 1,000m³에서 '18년 646m³으로 '16년 판매물량의 약 1/3이 감소하였으며, '19년 상반기 현재에는 전년상반기 대비 30.3%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합관 전체 국내수요가 약 $\times\times\times\text{m}^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타수입(중국과 말레이시아산)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인해 그 수입물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지속 증가하여 '19년 상반기 $\times\times\times\%$ 로 급등('16년 $\times\times\times\%$)하면서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중인 수입물품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상실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판매부진에 따라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조사대상기간 중 '16년 1,000m³에서 '19년 상반기 1,053m³로 연평균 13.4% 증가하였고, 재고율도 '16년 $\times\times\times\%$ 에서 '19년 상반기 $\times\times\times\%$ 로 13.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생산자가 덤핑물품 급증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생산량을 상당부분 감소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의 급증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보고서⁶⁷⁾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16년 $\times\times\times\%$ 에서 '19년 상반기 현재 $\times\times\times\%$ 로 덤핑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매년 지속적이면서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6년 $\times\times\times\%$, '17년 $\times\times\times\%$, '18년 $\times\times\times\%$ 로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였고, '19년 상반기에는 $\times\times\times\%$ 로 기타국 전체 수입물품 시장점유율($\times\times\times\%$)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기타국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은 '16년 $\times\times\times\%$, '17년 $\times\times\times\%$, '18년 $\times\times\times\%$, '19년 상반기 현재 $\times\times\times\%$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66) 조사보고서 pp.88~90

67) 조사보고서 p.90

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덤핑마진의 크기

조사보고서⁶⁸⁾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m³당 제조원가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16년 ×××원에서 '19년 상반기 ×××원으로 연평균 5.0% 지속 증가하였다.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가 상승하는 추세는 생산량 감소에 따라 고정비성 원가인 노무비와 제조경비의 단위당 원가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16년 ×××%, '17년 ×××%, '18년 ×××%, '19년 상반기 현재 ×××%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이 제조원가보다 지속적으로 낮아,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의 적자경영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제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동종물품의 저가판매 및 가격인상 억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종물품의 m³당 판매가격은 '16년 10,000원에서 '17년 9,659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하였고, '18년에는 10,221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으며, '19년 상반기 현재에는 전년대비 4.9%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첫째, '17년도의 동종물품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3.4% 감소한 것은, 덤핑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절대적 및 상대적 물량이 급증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 수준으로 저가판매 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18년도의 동종물품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5.8% 증가한 것은, 단위당 제조원가가 전년대비 13.1%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 수준의 저가인 상황에서, 덤핑물품의 가격상승률이 4.5%에 불과함에 따라 가격인상이 억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19년도 상반기 현재 동종물품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4.9% 증가한 것은, 여전히 단위당 제조비용은 판매가격 대비 ×××%로 높은 상황에서, 덤핑물품의 저가판매로 인해 판매가격 상승이 억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보고서⁶⁹⁾에 의하면,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최종

68) 조사보고서 pp.91~92

덤핑률은 9.18% ~ 10.65%로 덤핑마진의 크기가 미소 덤핑마진 이상이므로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덤핑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에 반영됨으로써 동종 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윤, 투자수익, 현금수지

조사보고서⁷⁰⁾에 의하면,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16년 ×××백만원에서 '17년 ×××백만원 적자로 전환되었고, '18년에는 ×××백만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19년 상반기 현재는 ×××백만원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부문 영업이익률은 '16년 ×××%에서 '17년 △××%, '18년 △××%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19년 상반기 현재에도 △××%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생산 가동률이 감소하여 고정비용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17년에 적자 경영으로 전환되었으며, '18년에는 매출 총손실까지 발생하면서 적자폭이 커졌고, '19년 상반기 현재에도 인원감축의 구조조정 등 효과로 매출총이익이 실현되었지만 판매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업의 투자수익률 역시 '16년 ×××%에서 '17년 △××%, '18년 △××%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19년 상반기에도 △××%로 여전히 부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보고서⁷¹⁾에 의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6년 ×××백만원, '17년 ×××백만원, '18년 △×××백만원으로 현금유입에서 현금유출로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19년 상반기 현재에도 △×××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마.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성장성

69) 조사보고서 p.92

70) 조사보고서 pp.93~94

71) 조사보고서 p.97

조사보고서⁷²⁾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16년 1,000명, '17년 930명, '18년 76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년 상반기 현재 794명으로 '16년 고용인원의 34.7% 수준의 큰 폭의 감소 추세로 조사되었다.

1인당 평균임금은 '16년 10,000천원, '17년 10,492천원, '18년 11,285천원, '19년 상반기 10,210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연평균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8년도와 '19년 상반기에는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연평균 고용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인당 평균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19년 상반기 현재는 '18년 대비 총임금 감소폭이 더 커져서 1인당 평균임금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보고서⁷³⁾에 의하면, 생산성 지표를 보여주는 총부가가치, 1인당 생산량 및 1인당 매출액 지표는 전반적으로 조사대상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1.9~4.8% 감소 수준으로 부정적인 지표를 보여주었다.

총부가가치는 '16년 10,000백만원에서 '18년 6,033백만원으로 연평균 22.3% 크게 감소하였으며, '19년 상반기 현재는 소폭 증가하였다. 1인당 부가가치는 '16년 10,000백만원에서 '18년 8,577백만원으로 연평균 10.9% 크게 감소하였으며, '19년 상반기는 고용인원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생산량은 '16년 1,000m³에서 '18년 837m³으로 연평균 8.5% 크게 감소하였으며, '19년 상반기 현재는 고용인원이 더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매출액은 '16년 10,000백만원에서 '18년 8,693백만원으로 연평균 6.8% 크게 감소하였으며, '19년 상반기 현재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보고서⁷⁴⁾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성장성 부분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와 지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해 내부적인 수익창출능력이 하락하여 성장을 위한 투자여력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2) 조사보고서 p.95

73) 조사보고서 p.96

74) 조사보고서 p.97

바. 자본조달 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조사보고서⁷⁵⁾에 의하면, '17년 이후 적자전환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내부 자본 조달 능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보고서⁷⁶⁾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설비투자액은 '16년 10,000백만원에서 '18년 5,594백만원으로 연평균 25.2% 지속 감소하였으며, '19년 상반기 현재에도 전반적으로 설비투자가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종물품 관련 연구개발비도 '16년 10,000백만원에서 '18년 7,529백만원으로 연평균 13.2% 지속 감소하였으며, '19년 상반기 현재에도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이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종합 검토

이상에서 보듯이, 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국내 판매량 및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 국내산업 피해 지표들이 급감하는 등 부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덤핑물품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은 국내 시장점유율을 크게 상실하면서 구조조정(인원 감축), 일부 공정의 가동중단 및 적자경영 등 실질적 피해를 나타내는 지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V.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및 관세법 제63조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 동 협정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

75) 조사보고서 p.97

76) 조사보고서 p.98

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 및 가격효과)와 국내산업에 덤핑수입이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데 유의미한 제반 경제적 지표의 검토를 통해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는지를 판단하면서, 동시에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

조사보고서⁷⁷⁾에 의하면, 위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 및 가격)”와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베트남산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첫째, 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국내산업 합판의 점유율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덤핑물품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times\times\times\%$ 수준의 저가로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인상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이 제조원가보다 지속적으로 낮아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의 적자경영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조사보고서⁷⁸⁾ 주요 지표에서 보듯이,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77) 조사보고서 pp.105~106

78) 조사보고서 p.106

국내 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국내 판매량 및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이 급감하게 되었고, 국내 시장점유율을 크게 상실하면서 구조조정과 일부 공정의 가동중단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덤핑물품 수입 이외⁷⁹⁾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

조사보고서⁸⁰⁾에 의하면, 덤핑물품 이외에 수입되는 합판의 물량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16년 1,000m³에서 '18년 757m³으로 연평균 13.0%으로 지속 감소하였으며, '19년 상반기 현재에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국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은 '16년 ×××%, '17년 ×××%, '18년 ×××%, '19년 상반기 현재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되는 물품의 m³당 판매가격은 조사대상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덤핑물품보다 항상 높았으며, 국내 동종물품과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였고 '18년 이후에는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

기타 수입이 감소한 것은 그간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에 대한 효과와 함께, 덤핑으로 인한 저가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 베트남산 합판으로 그 수입이 대체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덤핑물품의 가격보다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 및 가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은 반덤핑 관세 조치중임에 따라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는 미미한

79) 중국산 및 말레이시아산의 경우 종료재심사 최종판정('20.8월, 제403차 무역위원회)에서 덤핑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인과관계의 종합적 검토를 위해 기타국산 물품과 같이 검토함

80) 조사보고서 pp.107~114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이 국내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나. 국내소비 변화

조사보고서⁸¹⁾에 의하면, 수출자측은 국산품의 판매량 감소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합판의 국내수요 감소로 인한 것이고 베트남산 수입증가와 관련 없음을 주장하였고, 합판유통협회는 국내생산자는 연구개발 등을 통한 품질향상에는 무관심하고 반덤핑조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합판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합판이 알미늄폼 등 다른 대체품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포장협회는 국산품의 판매량 감소는 합판수입 증가 외에도 대체품의 등장과 건설자재 발전으로 합판사용이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자측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건설공사에서 합판과 알미늄폼의 사용비율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합판수요($\times\times\times\text{m}^3$)가 일정한 상황에서 베트남산 합판의 시장점유율이 2배 증가, 국산품 수요는 절반으로 감소한 사실은 베트남산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의 60%도 안되는 저가로 유통되는 베트남산 합판 덤핑으로 인해 국내합판시장의 가격체계가 교란되고 제조원가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으로 수년간 심각한 적자경영에 봉착해 있으며, 국내산업에 대한 그간 10년간 반덤핑 관세 보호조치는 특혜가 아닌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입·수요자가 제기하는 주장은 명확한 입증자료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에 불과하여 반덤핑 규정상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국내소비는 '16년 1,000 m^3 , '17년 1,009 m^3 , '18년 982 m^3 로 연평균 0.9% 소폭 감소로 국내소비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소비변화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일부 '18년 및 '19년 상반기 감소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81) 조사보고서 p.109~111

대상기간 중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연평균 22.0%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국내소비 감소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국내산업의 피해는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른 합판 거푸집 대체재의 급성장 등 합판에 대한 구조적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 소폭 감소(연평균 0.9%) 원인의 일부는 될 수 있겠으나, 동종물품 판매량의 감소폭(연평균 22.0%)을 설명하는 충분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 수출동향

조사보고서⁸²⁾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수출물량은 '16년 1,000m³, '17년 1,363m³, '18년 14m³, '19년 상반기 현재는 수출실적이 없으며, 총출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아 수출의 변화가 동종물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타요인

조사보고서⁸³⁾에 의하면,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 협정 제3.5조에서 열거한 국내산업의 생산성, 기술발전 등 사항은 이해관계인들이 관련 증빙이 충분히 포함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소결

이에 위원회는 위에서 조사실이 분석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 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덤핑 물품의 가격보다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한 기타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및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등은 미미하여, 위 기타 요인들은 덤핑수입으로 인해

82) 조사보고서 p.112

83) 조사보고서 p.113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3. 인과관계 종합검토

위원회는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첫째, 덤핑수입 물량이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국내산업 합판의 점유율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급감한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덤핑물품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times\times\times\sim\times\times\%$ 수준의 저가로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인상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위 덤핑물품 수입의 영향으로 국내 산업의 가동률, 생산량, 국내 판매량 및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이 급감하게 되었고, 덤핑물품 수입 급증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크게 상실하면서 구조조정과 일부 공정의 가동중단 및 적자경영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기타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및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등은 미미한 바, 위 기타 요인들은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앞서 검토한 모든 요소들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VI.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1. 덤핑률 수준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률 산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대로 개별공급자별 덤핑률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어 전체 답변서를 제출한 ‘사비’, ‘탄홍’, ‘준마 푸토 및 키우티 준마’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⁸⁴⁾, 관세법 제51조⁸⁵⁾ 등에 의거, 각각 10.65%, 10.27%, 10.55%의 덤핑률을 산정한다.

자발대응업체로 선정되어 전체 답변서를 제출한 ‘엔바이’와 ‘룽자’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0.2조 및 제9.4조의 (ii)⁸⁶⁾,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단서규정⁸⁷⁾ 등에 의거, 각각 9.25%, 9.18%의 덤핑률을 산정한다

그 밖의 공급자⁸⁸⁾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⁸⁹⁾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⁹⁰⁾의 규정 등에 의거, 조사대상공급자인 ‘사비’, ‘탄홍’, ‘준마 푸토 및 키우티 준마’의 덤핑률을 대한국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10.54%의 덤핑률을 산정한다.

2. 국내산업피해구제 수준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은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최소부과원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은 「덤핑 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무역위원회예규 제2010-2호)에 근거하여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덤핑수입물품

84)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 “당국은 (중략)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한다. (후략)”

85) 관세법 제51조 : “기획재정부령으로 ……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86)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i)“(전략) 당국은 6.10.2조의 규정된 대로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세 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87)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단서규정 : “(전략) 다만, 조사대상기간 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64조(이해관계인의 자료협조요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령 제65조 제1항 : “(전략) 덤핑방지관세는 (중략)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후략)”

88)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함

89)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는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90)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후략)”

의 판매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국내산업피해구제 수준을 산정⁹¹⁾하였다. 조사실은 적정영업이익률⁹²⁾은 한국은행의 동종업종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은 97.97%로 산정하였다.

3. 최종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이에 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최소부과원칙)에 따라 산업피해구제수준과 각 공급자별로 산정된 덤핑률을 비교하여 낮은 율로 산정된 덤핑방지관세율(9.18 ~ 10.65%)을 각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으로 결정한다.

VII.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의 요청 및 기타 주장 검토

1.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의 요청 검토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특정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국내생산자의 생산실적 여부, 생산가능 여부,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다른 모델과의 대체 가능 여부, 우회덤핑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 제외여부를 결정⁹³⁾한다.

조사보고서⁹⁴⁾에 따르면, 포장협회는 이른바 ‘포장용 합판’(보통합판-준내수-E2급)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국내생산품과 경쟁관계도 없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포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6~10mm

91)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산정방식 (무역위원회예규 제2010-2호)

$$\text{산업피해 구제수준(\%)} = \frac{\text{동종물품 적정판매가격} - \text{덤핑물품 판매가격}}{\text{덤핑물품 수입가격(CIF)}} \times 100(\%)$$

92) 동종업종 (C16.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영업이익률 (‘16년) 5.14%, (‘17년) 3.90%, (‘18년) 3.73%, (‘19년) 통계 미발표로 ‘18년 수치(3.73%) 적용 (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93) 덤핑조사 업무매뉴얼은 “이해관계인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 등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국내생산자의 생산실적 여부, 생산가능 여부,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다른 모델과의 대체 가능 여부, 우회덤핑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 여부 검토”하도록 규정함

94) 조사보고서 pp.118~125

두께의 합판은 포장업계의 연간수요(12만 4,700m³, 추정치⁹⁵)와 산림청이 분석한 해당 HSK⁹⁶의 수입물량(13만 1,700m³)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거푸집용, 내장재용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두께의 제품만이라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산림청에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이 수입되는 경우 '포장용'임을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사실은 포장협회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내생산자의 의견을 조회하였다.

산림청은 포장협회가 제시한 '포장용 합판'의 정의는 '보통합판'에 포함되고 단순 용도에 대한 구분으로 '포장용 합판'이 학문적·산업적으로 정의된 바 없고, 현행 합판규격 중 '포장용 합판'의 별도분류 가능성이 없으며, 포장협회가 제시한 분류기준에 의한 '포장용 합판'은 국내생산합판과 대체 가능성이 있으며 포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6~10mm 합판과 관련, 포장협회가 주장한 포장업계의 연간 수요는 포장협회의 추정치로서 산림청이 확인할 수 없고, HSK 코드별 수입물량은 산림청이 아니라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⁹⁷의 자료로서 내수성(내수, 준내수)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SE0, E0, E1, E2)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전량을 다 포장업계가 사용하는 준내수-E2급 합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산림청은 포장협회가 제안한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이 수입되는 경우 '포장용'임을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포장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보통합판이 포장용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할 시스템 및 규정 등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관세청은 합판은 품목분류표상 HS 4412호에 재질 및 두께에 따라 10단위 코드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 않아, 통관시 '포장용 합판(보통합판-준내수-E2급)'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95) 자체설문에 응답한 포장협회 회원사의 물량(26개사/ 40,667m³)에 기초해, 전체 포장협회 회원사의 물량(65개사/ 56,267m³)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포장업계 전체의 합판 구매량(포장협회 주장 730개사 / 12만 4,700m³)을 추산

96) 포장협회는 6~10mm 합판의 HSK 코드로 4412314019, 4412314029, 4412334010, 4412334020, 4412344010, 4412344020을 제시함

97) <https://unipass.customs.go.kr> 품목별 수출입 실적

국내생산자는 6~10mm 두께의 합판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18년 기준, 국내 생산자의 6~10mm 합판 생산 비중은 xxx%이며 주로 마루대판, 인테리어 벽재, 내장재 등 포장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6~10mm 합판 물량과 관련한 포장협회의 주장은 증빙이나 입증없이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만들어낸 수치에 근거하고 있어 신뢰성이 없으며, 관련 HSK 코드를 부과제외시 우회덤핑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고 E0, E1급 합판도 제외되어 반덤핑조치의 국내산업보호 실효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조사실은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을 거푸집용 합판으로 이용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및 시행령 제95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 상의 품질확보가 필요한 건설 자재·부재의 범위에 합판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건설자재·부재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에 대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가 보통합판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법 위반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조사실 검토 결과,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E1급 이상 보통합판 등을 포장업체가 사용하는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의 대체품으로 사용가능하고,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은 포장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건축 기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⁹⁸⁾되고 있으므로,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국내생산자는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에 대한 과거 생산실적이 있고, 보통합판-준내수 제품 생산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E2급 합판의 생산은 기존 설비의 변경없이 투입하는 접착제의 성분 및 배합의 조정만으로 가능하여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을 어렵지 않게 생산 가능하며, 6~10mm 두께의 합판에 대한 부과제외요청과

98) 조사보고서 pp.13~19, 120, 124

관련해서도 국내생산자는 마루대판, 인테리어 벽재, 내장재 등의 용도로 해당 두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두께를 기준으로 부과제외를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⁹⁹⁾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위와 같이 조사실이 검토한 바를 종합하고, 특히 포장용 이외에 거푸집용 등 다른 용도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포장협회가 주장하는 포장용 합판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합판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점, 국내생산자가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의 과거 생산실적이 있고, 생산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통합판-준내수-E2급 합판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2. 기타 주장 검토

위원회는 공청회('20.6.18) 및 이해관계인 회의('20.2.13, '20.8.19)시 이해관계인들이 주장한 중요설비 철거여부, 원산지 문제, 기타 사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가. 중요설비 철거여부

조사보고서¹⁰⁰⁾에 의하면, 합판유통협회측은 국내생산자는 합판공정의 중요설비인 절삭기와 건조기를 철거하여 제조업체가 아닌 가공업체에 불과하며 국산재 합판을 생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현지실사시 절삭기 및 건조기 보유를 확인(선창산업-5.21, 이건설산업-7.22)하였다. 다만 일부 생산자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설비를 심야시간대로 감축하여 운영하거나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9) 다만, 만약 포장협회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포장용 합판이 다른 합판과 구별되고, 우회덤핑 등 우려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황변동제심 등을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검토하였다.

100) 조사보고서 p.128

나. 원산지 문제

조사보고서¹⁰¹⁾에 의하면, 포장협회는 국내생산 합판의 대부분은 단순가공으로, 합판생산을 위한 단판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법 원산지 규정상 단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적층한 제품은 한국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견산업은 베니어 생산이 전무한 상황으로 확인되었고, 선창기업도 수요량의 극히 일부만 '야간' 생산하고 있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신청기업의 제품은 관세법상 외국제품으로 분류되어 관세법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 대상 성립에 문제점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생산자측은 관세법에 따르면 동종물품을 생산한 기업이 '국내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동종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에 대한 판단은 애초에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합판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는 제조적격이 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통한 무역구제의 대상이 되는 국내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포장협회측이 주장한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합판 생산의 원재료인 단판(베니어)은 HS code 4408에 해당하는 바, 국내생산자가 베니어를 수입하여 합판(HS code 4412)을 생산할 경우, 합판은 HS code 4단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본 반덤핑 산업피해조사의 범위 및 검토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 등 관련 규정상 원산지에 대한 특별한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위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는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종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는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 및 유사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원산지 판정기준 등 관련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01) 조사보고서 pp.128~130

또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 관련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상 원산지제도는 어떤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판정하고,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도로서, 합판의 경우 수입물품이 부품(원료)으로 국내에 생산·제조과정에 투입된 경우, 수입물품으로서 지위는 사라지고 국내 생산물품이 된다는 입장이며 조사실은 이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본 조사의 신청인은 위 관세법 등 관련 규정상 국내생산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로서, '국내생산사업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관세법상 산업피해 구제대상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다. 기 타

조사보고서¹⁰²⁾에 의하면, 수출자측은 수출용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영부실·도산 등 우려가 있고, 포장재 단가인상으로 인해 최종소비자 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합판유통협회측은 덤핑방지조치가 부과될 경우, 국내 목재제품 및 나무제품 제조업에 종사(4,613개 사업체, 3만 6771명)하는 많은 종업원과 소비자에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포장협회측은 수출용 목상사 포장업체는 중소·영세기업으로 우리 수출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임에도,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일부 도산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생산자측은 최근 판매실적 악화로 수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였지만, 합판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합판은 건축용, 산업용 뿐만 아니라 국가재난상황 등 비상위기 시 사용되는 자재로서 반드시 안정적인 국내공급원이 필요한 산업이며, 현재 우리 산림 목재자원이 성숙단계에 있어 국내 산림자원 활용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그간 수입합판의 덤핑행위로 인해 지속되는 어려움속에서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1급 발암물질)을 줄이고, 접착력을 강화하는 부재료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양질의 합판생산과 정부의 친환경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수입사 상위 3개사(약

102) 조사보고서 pp.131~133

70%이상)의 전체 고용인원은 총 46명으로 합판관련은 20명에 불과하고, 수입자측의 피해 예상인원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위 목재제품에는 합판 및 연계산업도 포함되어 있는 등 정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반덤핑조치는 불공정한 덤핑행위에 대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합판은 소비재가 아닌 건설업, 조선업 및 가구산업의 원자재이며, 전쟁 등 유사시에 긴요한 시설피해복구 등을 위한 필수자재의 하나로서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요 물자로서 국내 합판산업 기반이 무너져 수입합판에 의존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이 긴급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자재공급을 담보할 수 없고, 국가 주요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VIII.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관세법 제56조제2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최대 5년 이내에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보고서¹⁰³⁾에 의하면, 국내생산자측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최소 5년간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62.3%(6,335천ha)가 산림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합판용 베니어를 생산할 수 있는 31년 이상 임목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국산 원목의 활용(원재료 조달비용 절감, 공급안정성 확보)을 통한 국내 합판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목재산업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과거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의 원심과 재심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은 2~3년에 불과하여 국내산업은 재심사 요청·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고 수입산 합판의 지속적인 수입선 전환으로 인해 덤핑방지조치의 효과가 반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합판유통협회측은 부득이 덤핑방지관세 부과시에도 국내생산자가 2년간 합판을 수입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취소하

103) 조사보고서 pp.126~127

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10년 이상 계속된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합판산업의 피해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피해와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5년의 부과기간을 부여하여 무역구제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짧은 부과기간으로 인해 국내산업은 불가피하게 지난 10년간 10건의 반덤핑조사를 연이어 신청하게 되어 과도한 비용과 시간 부담이 발생한 바, 덤핑사실이 입증된 동일 또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기간을 5년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과기간이 짧기 때문에 반덤핑조치 빈발국가라는 오해를 줄 수 있으며, 부과기간 5년은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무역구제 관행 및 국제규범과도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에서 각 공급자별로 산정된 덤핑방지관세율(9.18 ~ 10.65%)에 대해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적용 법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제32조
관세법 제51조 ~ 제53조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 제65조, 제71조
WTO 반덤핑협정 제1조 ~ 제6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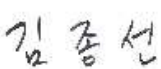


붙임자료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보고서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0년 09월 17일

위원장	장승화	
상임위원	강명수	
위원	김양희	
위원	오수원	
위원	김종선	
위원	김시중	
위원	김세연	
위원	김대원	
위원	강진구	